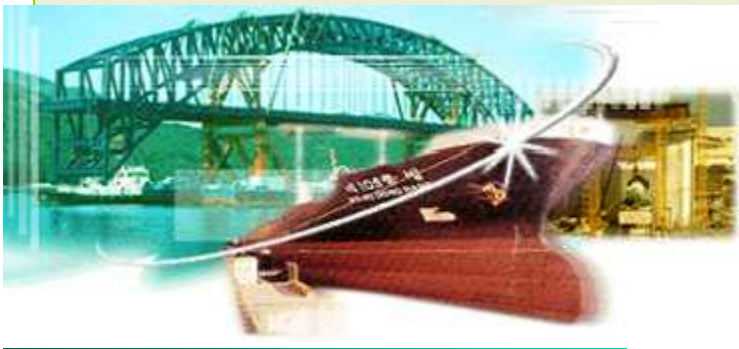


CISG 제3편 물품의 매매

제2장 매도인의 의무

제1절(제30조-제34조)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



원광대학교

유 하상

UN물품매매협약

CISG 제3편 물품의 매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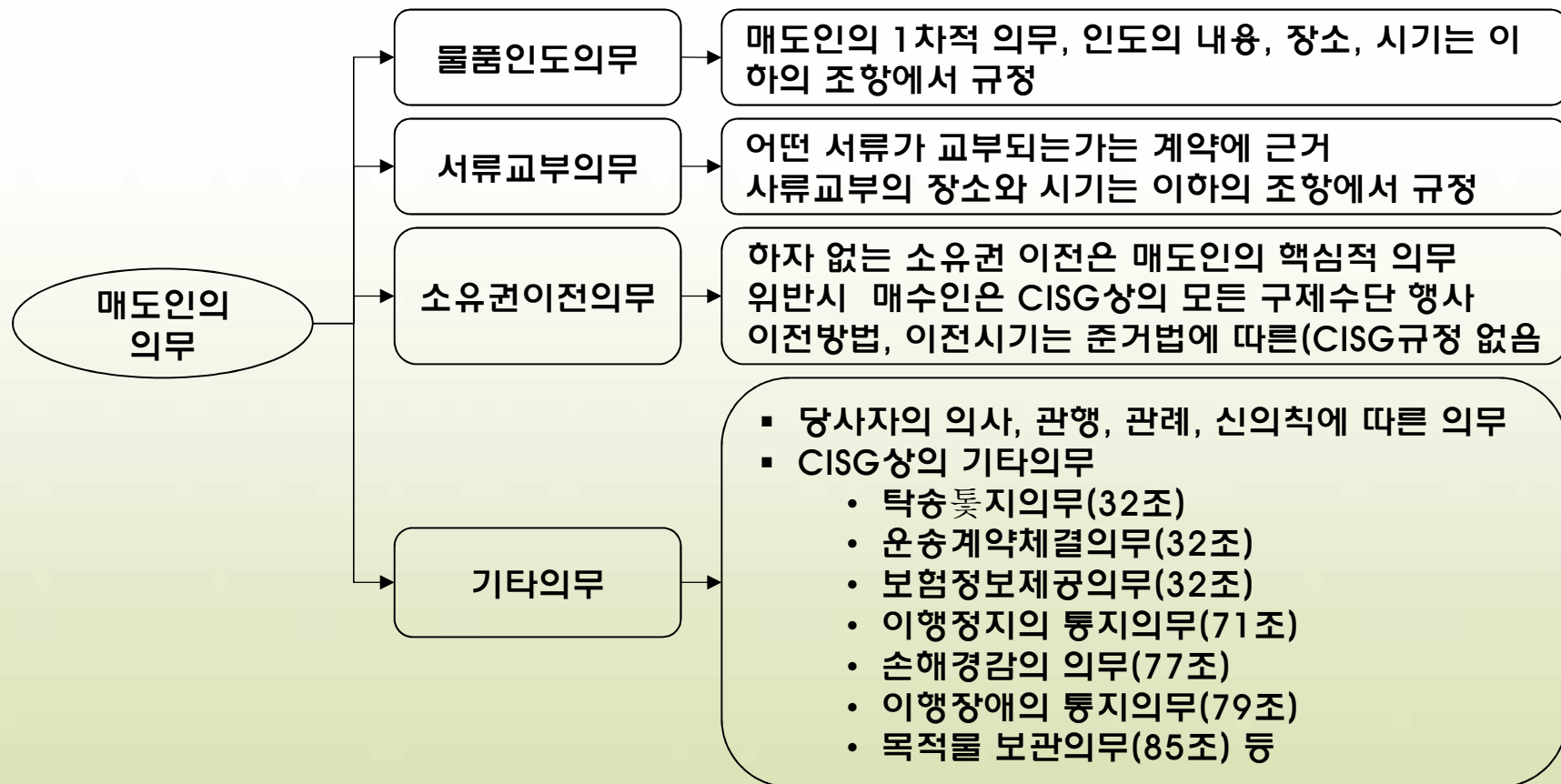
제2장 매도인의 의무

제1절(제30조-제34조)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



■ 매도인 의무의 요약(제30조)

(1)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, 관련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.



■ 물품의 인도와 인도의 장소(제31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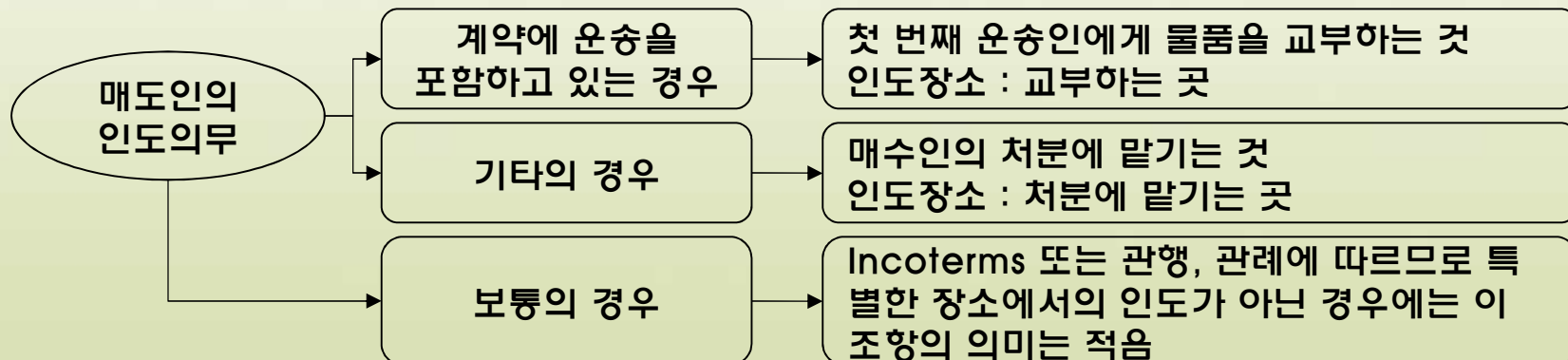
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다음과 같다.

[가]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

[나] [가]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,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.

[다]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

이 조항은 인도의무의 내용이 무엇인가와 인도장소가 어디인가를 규정하고 있다, 이를 구분하기 위해 계약에서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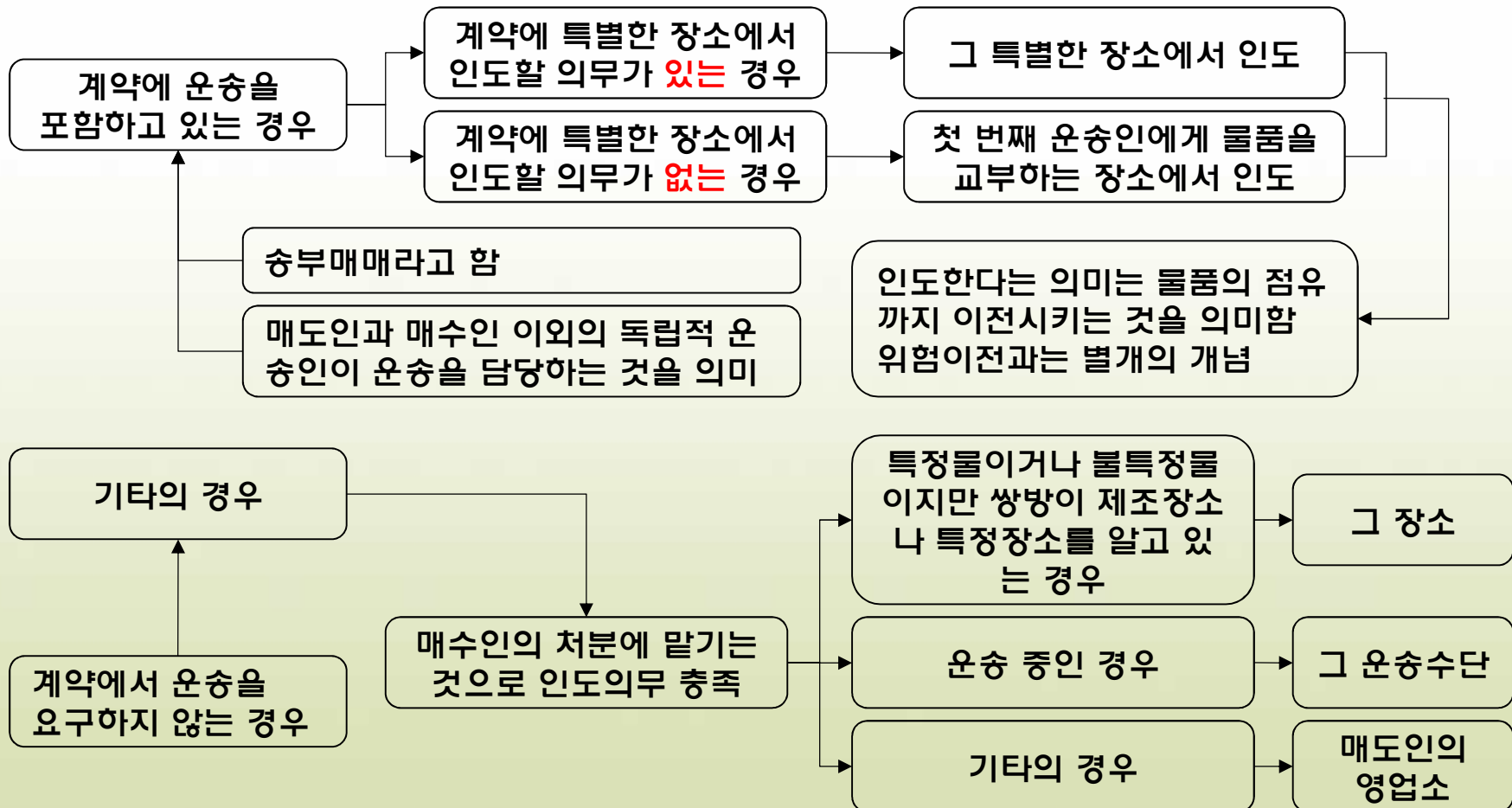


제2장 매도인의 의무

제31조 인도의 장소

■ 물품의 인도와 인도의 장소(제31조)

인도는 보통 운송서류의 교부로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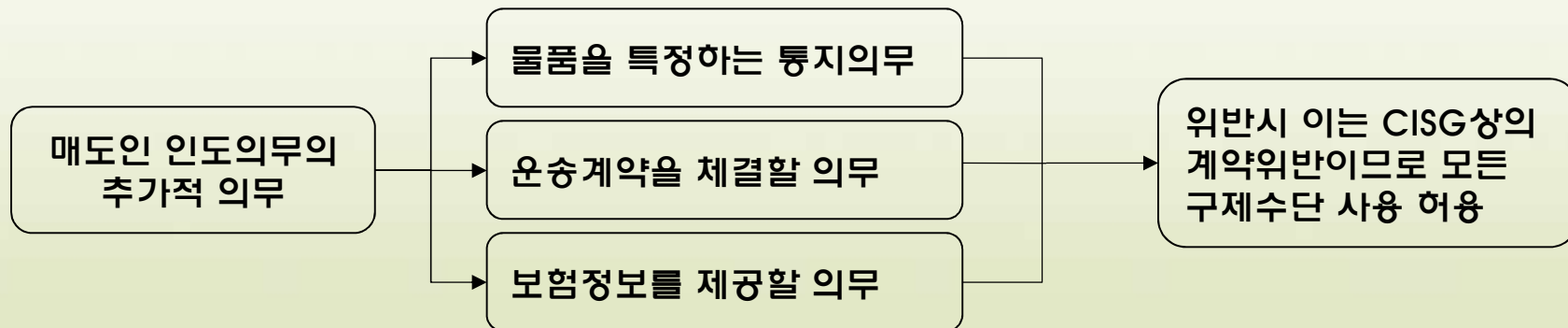


제2장 매도인의 의무

제32조 선적수배의 의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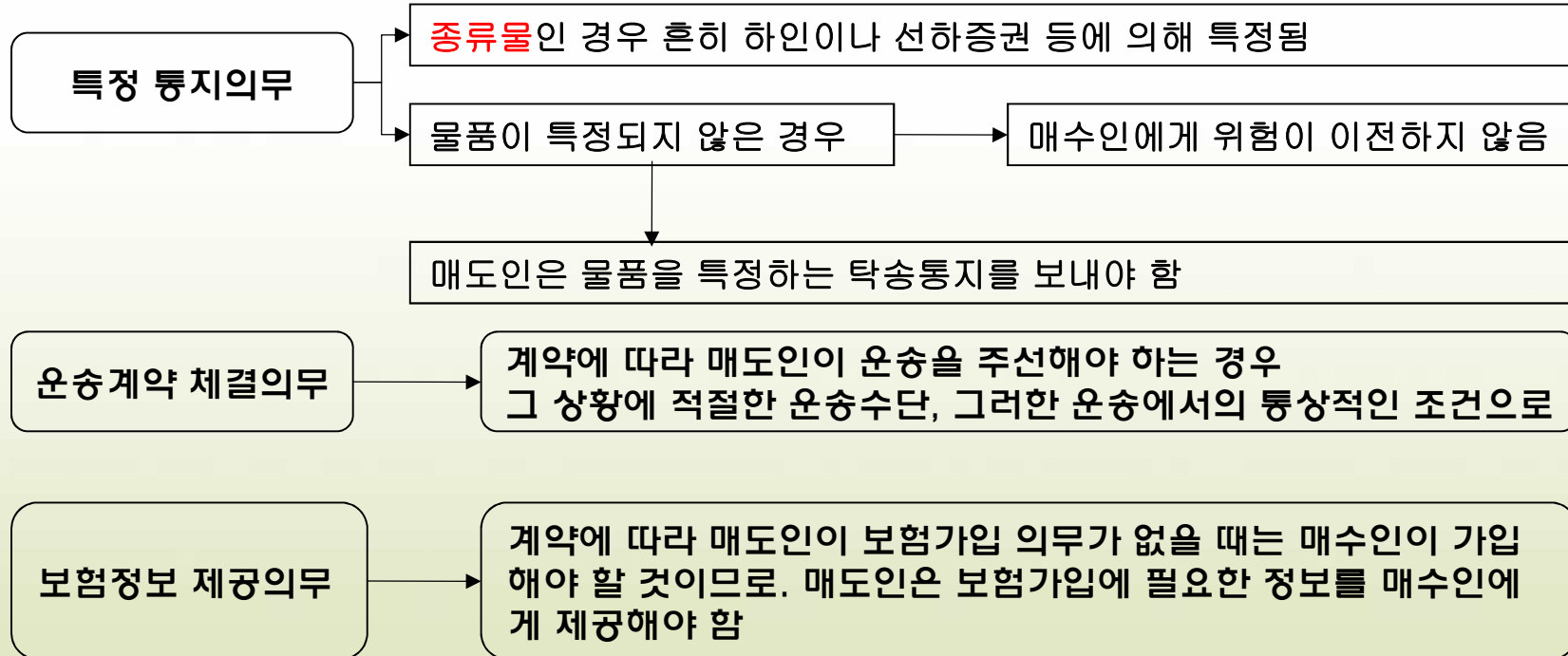
■ 매도인 물품인도 의무의 추가적 의무(제32조)

- (1)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, 물품이 하인(荷印),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,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(2)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,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 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(3)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(附保)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

■ 매도인 물품인도 의무의 추가적 의무(제32조)

공통된 특징을 가진 일정한 종류에 속하면서 특별히 어느 것이라고 지정되지 아니한 물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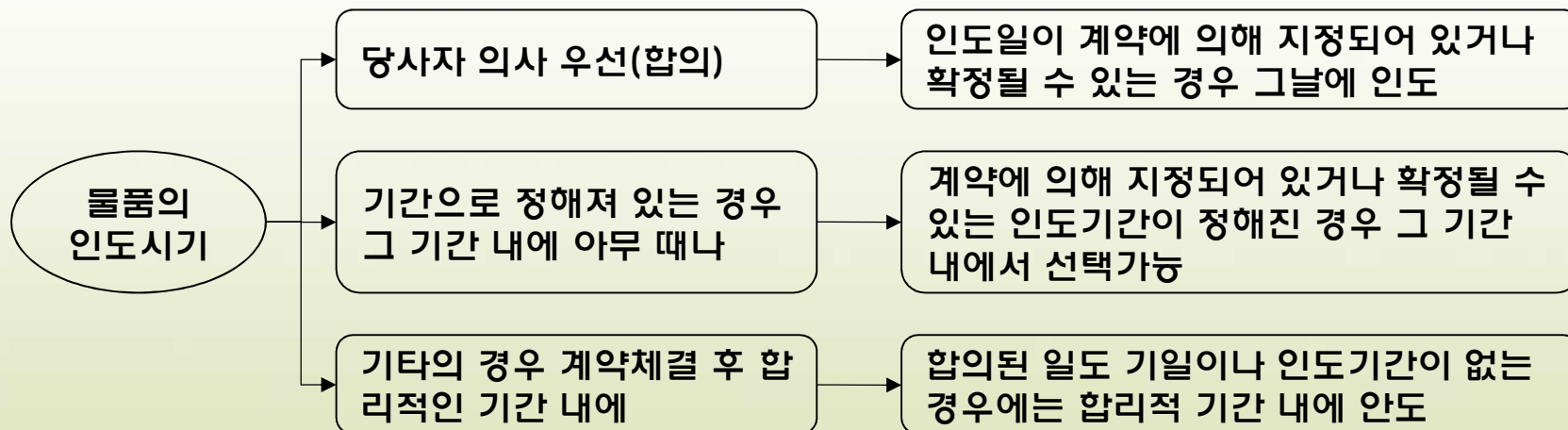
■ 인도의 시기(제33조)

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.

(가) 인도 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

(나)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,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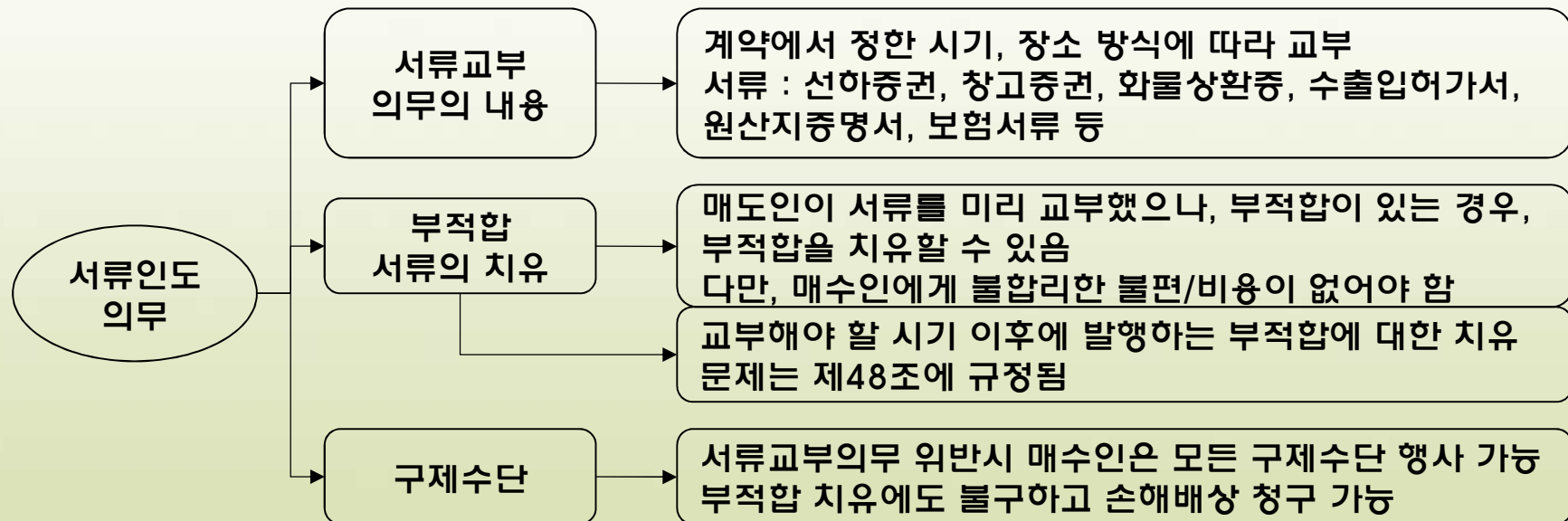
(다)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



■ 서류인도의 의무(제34조)

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,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.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,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.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保有한다.

이 조항은 서류교부 의무의 내용과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교부기한까지 치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.





감사합니다